

의안번호	2220046
의 퇴 인	오세희의원
회 답 일	2026.8.24.
추계번호	26B3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3 (반려동물의 사육 등에 관한 교육)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사육 교육(이하 “사육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1항) 1. 최근 3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2.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3 (반려동물의 사육 등에 관한 교육)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 실시 및 위탁기관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복지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동물사랑배움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26억 1,600만원임

- 다만, 동물사랑배움터의 의무교육 대상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맹견 소유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동물사랑배움터의 의무교육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교육시스템의 확충·고도화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교육 대상자의 규모 및 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확충·고도화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행 제도상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에 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교육 대상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시스템의 확충·고도화 범위 및 소요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